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입주자 소진 또는 명단 파기 이후 계약 해지 등 공급물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이하 ‘무순위 청약’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으나,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또한 공급 대상자에 포함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 크기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세대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크기별 구분을 세분화 및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공급 물량 추가 확보

2. 주요내용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 확대

나.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다.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 30%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 50%

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 (안 제41조)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구분

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사.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 (안 제57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 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4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하고, “14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60일까지”를 “180일까지”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4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하고, “14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4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하고, “14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10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10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의2 중 “75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3.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28조제4항제2호 중 “50퍼센트 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5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으로, “20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하고,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그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급 요건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제4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제4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43조제3항의 “20퍼센트”를 “19퍼센트”로 “10퍼센트”를 “9퍼센트”로 한다.

제5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41조의제1항,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⑤ 사업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⑤ ----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	-----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	-----무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	-----		
	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 방법	-----		
	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① -----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	-----		
	의 <u>40퍼센트</u> 이상(소수점 이하는	-- <u>500퍼센트</u> -----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		
	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	-----		
	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u>140퍼센</u>	----- <u>600퍼센</u>		
	<u>트</u>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	<u>트</u> -----		
	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	-----		
	비입주자로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④ -----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		
	체결일부터 <u>60일까지</u> (예비입주	----- <u>180일까지</u> -----		

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

⑤

----- 무주택세

대구성원인 성년자-----

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을 말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의 합계를 말한다)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

-----500
퍼센트-----

-----600퍼센트-----

② -----

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
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
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
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
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
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
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500퍼센트

600퍼센트

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
 ----- 60제
 곱미터-----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
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
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3. (생 략)

③ <신 설>

1. <신 설>

-----.

1. -----

----- :
40퍼센트

2. -----
----- : 40퍼센트

2의2. -----
----- : 40퍼센트

3.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60
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
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
(제4호의 경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u>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u> <u>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u> <u>70퍼센트</u>
2. <신 설>	<u>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u>
3. <신 설>	<u>3.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u>
4. <신 설>	<u>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경우 :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u>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u>	2. ----- ----- ----- ----- : <u>80퍼센트 이하</u>----- ----- -----
3. 투기과열지구: <u>50퍼센트</u>	3. ----- : <u>80퍼센트</u>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u>30퍼센트</u>	4. ----- ----- : <u>50퍼센트</u>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u>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u> 을 그 건설량의 <u>20퍼센트</u> 의 범위에서 연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u>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u>----- ----- <u>18퍼센트</u> -----

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 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신 설>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그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신 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2. <신 설>

가. <신 설>

1) <신 설>

2) <신 설>

나. <신 설>

1. 공급 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
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
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
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
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

⑤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⑥ <신 설>

1. <신 설>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2. <신 설>

⑦ <신 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
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
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
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
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
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⑦ 제1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2호
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
별공급) ③ -----

----- 19퍼센트

----- 9퍼센트-----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⑧ (생략) ⑨ <신설>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
--	---